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2024. 2. 1.



목 차

1. 일반·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1
2. 포장재 보관료	4
3. 헨포장재 품위선별 비용	5
4. 양 곡 가 공 임	6
5. 포 장 임	7
6. 양곡가공보험료	8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 방법	8
8. 일 반 하 역 료	9
[참고] 용어 설명 및 적용례	14
9. 톤백 및 팔레트 요율	15
10. 항 만 하 역 료	16
11. 철 도 임	19
12. 트 렉 운 임	20
13. 해 송 운 임	23

일반·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가. 일반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구 분	특 지				갑 지				을 지				아 적 보관 보험료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1급	2급		3급	등외		
쌀	346.0	315.6	243.7	207.5	182.1	306.0	279.7	219.5	183.4	160.6	278.6	254.3	199.2	166.6	145.3	113.0	2.80
현미 (TRQ 받쌀 포함)	277.0	252.4	195.0	166.0	145.7	244.8	223.9	175.7	146.7	128.5	222.9	203.4	159.3	133.3	116.2	90.4	2.52
벼	214.4	195.2	154.1	128.3	112.2	189.6	173.2	136.1	112.9	99.0	172.3	157.2	123.9	103.0	90.3	69.7	1.96
보리쌀 논리 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220.8	202.4	158.8	132.2	116.5	195.4	178.6	140.2	117.3	102.5	178.0	161.9	127.4	106.5	93.1	72.2	1.96
겉보리 쌀보리 밀	160.5	146.7	115.1	96.2	84.2	142.1	129.5	101.8	84.5	74.1	129.5	117.5	92.3	77.1	67.2	51.9	1.32

나.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구 분	특 지	갑 지	을 지	보 관 보 험 료
쌀	419.5	372.1	338.1	2.8
현미 (TRQ 밥쌀 포함)	335.7	297.7	270.5	2.52
벼	259.7	230.4	209.2	1.96
보리쌀, 눌린 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269.2	237.6	215.6	1.96
겉보리, 쌀보리, 밀	194.9	172.2	156.2	1.32

부 대 조 건

(1) 이 표의 양곡보관료 및 보험료는 1일 톤당 요금이며, 보관 일수의 계산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다.

(2)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특 지 :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및 특별시
- 갑 지 : 시 지역
- 을 지 :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의 양곡 보관료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에 5.0%를 가산 적용한다.

※ 단, 광역시 지역의 가산 대상에서 '95. 3. 1일 이후('95. 3 .1일 포함)에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제외한다.

예) 대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등

- (4) 지역과 관계없이 **톤백** 단위로 보관된 양곡은 5.0%, **팔레트** 단위로 보관된 양곡은 10.0%를 추가 가산 적용한다.
- (5) (3), (4)에 따른 가산 적용 시, **단위당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는 버린다.

계산 예시

- 예시1) 서울 소재 1급 보관창고 쌀 **톤백** 단위 보관
 : 315.6원[특지 1급창고 쌀 보관요율] × 1.1[광역시 가산 5% + 톤백 가산 5% 반영] = 347.1
- 예시2) 서울 소재 1급 보관창고 쌀 **팔레트** 단위 보관
 : 315.6원[특지 1급창고 쌀 보관요율] × 1.15[광역시 가산 5% + 팔레트 가산 10% 반영] = 362.9
- 예시3) 대구 달성군 1급 보관창고 쌀 **톤백** 단위 보관
 : 315.6원[특지 1급창고 쌀 보관요율] × 1.05[광역시 가산 해당없음, 톤백 가산 5% 반영] = 331.3
 * 대구 달성군은 '95.3.1.자 광역시 편입지역으로 광역시 지역 가산대상 아님
- 예시4) 충남 천안시 소재 1급 보관창고 쌀 **톤백** 단위 보관
 : 279.7원[갑지 1급창고 쌀 보관요율] × 1.05[톤백 가산 5% 반영] = 293.6
- 예시5) 경기 양평군 소재 1급 보관창고 쌀 **팔레트** 단위 보관
 : 254.3원[을지 1급창고 쌀 보관요율] × 1.1[팔레트 가산 10% 반영] = 279.7

※ 잘못된 계산 예시

서울 소재 1급 보관창고에 쌀을 톤백으로 보관 : (315.6원 × 1.05) × 1.05 = 347.9

- (6)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되, kg까지로 한다.
- (7) 양곡 보관보험료는 지역과 등급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민간창고(농협창고 포함) 및 정부 소유 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에 대한 보관보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손해보험사에 지급한다.
- (8) 일반창고와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TRQ 밥쌀**의 경우는 현미 보관료를 적용한다.
- (9)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0)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포장재 보관료

(단위 : 원/속)

구 분	단위(속/束, 묶음)	보 관 료	
		가공공장	야 적
P.P 대	200매	17.2	8.5
지 대	200	9.5	4.8
P.E 대(10kg들이)	700	11.4	5.9
P.E 대(4kg들이)	1,000	6.9	3.3
현 P.P 대	200	8.9	4.8
톤백 P.P 대	20	26.2	12.9
현 톤백 P.P 대	10	13.7	7.5

부 대 조 건

- (1)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보관하는 새포장재 보관료는 입고 다음 날부터 사용을 위해 출고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현포장재 보관료는 도정공장에서 제출하는 가공일보(현포장재 품위선별 결과 보고)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음 날부터 지급한다. 이외 사항 보관료에 대하여는 양곡가공도급계약서 제13조에 규정한 포장재 보관료를 적용한다.
- (2) 이 요금은 1일당 요금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 (3) 현포장재 중 가용품에 대해서만 보관료를 지급하며, 불용품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품위선별 분류를 하지 아니한 현포장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헌포장재 품위선별 비용

(단위 : 원/매)

구 분	단 위	관 리 비
헌 P-P 대	1매	19.1
헌 톤백 P-P 대	1매	113.8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품위선별 비용은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헌포장재를 “헌포장재 관리요령”에 따라 품위별로 선별 분류할 때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 (2) 이 표의 품위선별 비용은 선별한 헌포장재의 등급(가용, 불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양곡가공임

(단위 : 원/제품 톤당)

가공구분	제품곡종	원료곡종	가 공 임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 외 (특수지역)
정상가공	쌀	벼	125,308	115,189	103,227	94,898
	쌀	현미	111,143	102,168	91,558	84,169
	현미	벼	68,513	62,981	56,440	51,88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가공임은 포장 방법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원료의 하차료 및 입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이 표의 가공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상여금,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 시설등급 변동 시 가공임 적용은 해당 시·도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 양곡가공임을 포함한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은 8페이지 확인

5

포 장 임

(단위 : 원/제품 톤당)

포 장	규 격	포 장 임
P.P 대	40kg 들이	6,782
P.P 대	20kg 들이	18,384
지 대	20kg 들이	18,164
지 대	10kg 들이	20,033
P.E 대	10kg 들이	19,548
P.E 대(외포장 포함)	4kg×5개 들이	38,518
P.P 대	5kg 들이	23,225
P.P 대(툰백)	5kg×180개 들이	30,865
P.P 대(툰백)	1,000kg 들이	8,057
P.P 대(점보백)	40kg×30개 들이	11,535
팔레트(10kg 지대)	10kg×80개 들이	2,249
팔레트(20kg 지대 및 P.P.대)	20kg×48개 들이	2,196
팔레트(40kg P.P.대)	40kg×24개 들이	2,250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포장임은 포장 내용물과 관계없이 적용하며, 제품의 상차료 및 출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포장임에는 포장용지의 하차 및 입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표의 포장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포장임(지대 10kg 및 20kg에 한함)에는 1톤당 3% 물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5)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6) P.P 대(점보백) 포장임의 경우 40kg P.P 대 포장임과 별도로 지급하며, 식량 원조용 쌀에만 적용한다.
- (7) 팔레트 포장임은 정부관리양곡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고 랩핑 포장을 한 후, 크라프트지로 상단을 피복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8)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포장분부터 적용한다.

6

양곡가공보험료

(단위 : 원/제품 톤당)

제 품	원 료	보 험 료
쌀	벼	531
쌀	현미	595
현미	벼	514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보험료는 원료의 입고 후 제품출고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가공 중지와 제품의 인수기일 경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관보험료를 적용한다.
- (2) 이 표의 보험료에는 정부양곡가공화재공제특약협정서 제1조 1호(공제목적물의 범위)에 규정된 모든 물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 방법

- 양곡관리관이 가공을 요청한 양곡에 대한 가공비용의 계산은 원료의 하차·입고료 및 가공임, 제품포장임, 팔레트포장임, 점보백포장임(해외 원조용에 한함), 제품의 출고상차료를 각각 실 양곡 중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실 양곡 중량을 kg 단위까지 계산한다.

* 비용 계산 시 원료곡(벼·현미)의 하차·입고료는 원료곡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가공임부터는 제품(현미·쌀)의 중량을 적용한다.

8

일반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지대 10kg	지대 20kg	지대 10·20kg 외
1. 철 도 발 송 료	7,030	7,030	7,030
2. 철 도 도 착 료	7,178	7,178	7,178
3. 상 차 료	4,949	4,537	4,123
4. 하 차 료	4,489	4,114	3,740
5. 입 고 료	6,048	5,545	5,040
6. 출 고 료	6,048	5,545	5,040
7. 매 입 장 소 입 고 료	18,155	18,155	18,155
8. 매 입 직 송 상 차 료	11,978	11,978	11,978
9. 매입장소경비료(1일당)	325	325	325
10. 선 별 료	3,740	3,740	3,740
11. 이 적 료	3,740	3,740	3,740
12. 이 송 료			
- 20m 초과 50m까지	3,740	3,740	3,740
- 50m 초과 20m마다	1,838	1,838	1,838
13. 검 근 료	3,740	3,740	3,740
14. 복 포 훈 증 소 독 비	1,046	1,046	1,046
15. 양곡중량시험작업비	6,703	6,703	6,703
16. 호 송 료	3,897	3,897	3,897

2) 포장재

(단위 : 원/속)

항 목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 철도발송료	226.9	128.0	292.1	164.8	209.9	143.7	202.1
2. 철도도착료	232.1	131.1	297.8	168.1	214.4	146.5	206.5
3. 상차료	132.5	74.9	170.5	96.3	122.5	83.9	117.7
4. 하차료	120.5	67.7	154.7	86.6	111.5	76.1	107.4
5. 입고료	162.0	91.4	208.4	117.4	149.8	102.4	144.3
6. 출고료	162.0	91.4	208.4	117.4	149.8	102.4	144.3
7. 이적료	120.5	67.7	154.7	86.6	111.5	76.1	107.4
8. 이송료							
- 20m 초과 50m까지	120.5	67.7	154.7	86.6	111.5	76.1	107.4
- 50m 초과 매 20m마다	59.0	33.2	76.1	42.9	54.8	37.5	52.6
9. 검수료	120.5	67.7	154.7	86.6	111.5	76.1	107.4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 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노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3)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속)를 기준으로 한다.
- (4) 철도 수송 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다만, 철도발송 시 호송인을 붙이면 별도로 이 표의 호송료를 적용한다.
- (5) 매입장소 입고료는 매입장소의 보관창고로 입고시키는 때에만 적용하며, 매입장소와 매입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2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때는 일반하역료(매입 직송상차료, 하차료, 입고료, 운임)를 적용하여야 한다.
- (6) 매입장소 입고료는 50m 이내의 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 (7) 매입장소 경비료는 매입장소와 보관창고의 거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매입 당일 입고시키지 못하는 양곡을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8) 매입 직송 상차료는 순회 매입(보관창고가 없는 지역) 또는 매입장소의 창고여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입물량을 다른 지역 창고로 직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9) 선별료와 이적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예) 보관된 양곡의 품질변화 등으로 품위선별을 하고 동일창고내로 이적할 경우에는 선별료나 이적료 중 한 항목만 지급하여야 한다.

- 선별료는 양곡관리관(분임 양곡관리관 포함)이 인정한 불가항력 사고 및 사고우려곡에 대한 구출품의 정상품위곡과 사고피해곡에 대한 분류작업 비용을 말한다.
 - 이적료는 양곡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창고 내에서 사고 및 사고 우려품의 품위분류 후 이적하거나 공공비축 매입 여석확보를 위한 더미 재구성을 위해 기존 적재더미에 구성되었던 양곡을 다른 더미로 이동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 (10) 이송료는 20m 초과 200m까지 이송 작업할 때 적용하며, 20m 이내의 이송료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송 거리가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하역료(상·하차료, 운임)를 적용한다.
 - (11) 검근료는 TRQ 도입 시 중량조사와 양곡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양곡에 대한 중량 확인 및 재고조사 시 부정행위가 예상되는 창고의 보관양곡에 대해 검근(중량 확인) 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다.
 - (12)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 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에서 인정한다.)
 - (13) 양곡 훈증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관급으로 하며, 복포훈증 소독에 한하여 비용(복포훈증소독비)을 지급한다.(창고훈증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14) 개포장 작업 도중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실제 일수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지급한다.

- (15) 양곡중량시험작업비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양곡의 기간별 중량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등을 할 때의 작업비용이다.
- (16) 호송료는 철도 수송과정에 정부관리양곡의 도난방지 및 안전수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 (17)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8)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용어 설명 및 적용례

항 목	용어 설명 및 적용례
철 도 발 송 료	철도로 양곡(또는 포장재)을 운송할 때 기차에 적재하는 비용
철 도 도 착 료	철도로 운송된 양곡(또는 포장재)을 기차에서 내리는 비용
상 차 료	운반 차량에 양곡(또는 포장재)을 적재하는 비용
하 차 료	운반 차량에서 양곡(또는 포장재)을 내리는 비용
입 고 료	양곡(또는 포장재)을 보관창고에 넣는 비용과 도정공장에서 원료곡을 원료 탱크에 넣는 비용
출 고 료	양곡(또는 포장재)을 보관창고나 도정공장에서 들어내는 비용
매 입 장 소 입 고 료	매입장소에서 매입장소의 보관창고로 넣는 비용 * 매입장소에 양곡이 분산 적재되어 있어 창고 입고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 입고료 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상·하차비 및 입고료가 발생하지는 않음 ** 매입장소와 양곡을 보관할 창고의 거리가 200m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하역료(매입직송상차료, 하차료, 입고료, 운임)를 지급 *** RPC 산물벼 인수도 작업 시에는 매입장소 입고료 미지급
매 입 직 송 상 차 료	순회 매입(보관창고가 없는 지역) 또는 매입장소의 창고 여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입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직송할 때의 비용 *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적재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 상차료 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음
매 입 장 소 경 비 료	매입한 양곡을 당일 입고하지 못하여 경비를 할 때 인건비
선 별 료	수침화재 등의 사고품의 품위 분류 시 작업비용
이 적 료	창고 내에서 더미를 옮기는 작업비용
이 송 료	창고-공장↔창고-공장간 거리가 20m 초과하고 200m 이내일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이때 자가 운반도구(운반차량, 지게차 등)의 사용비용도 포함되어있음 * 이송거리가 200m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하역료(상차비, 하차비, 운임)를 지급
검 근 료(양 곡)	TRQ 수입쌀 도입, 사고품 등에 대한 중량 확인 비용
검 수 료(포 장 재)	포장재 제작 발주후 완성품에 대한 검수확인 지급 비용(조달청 등)
복 포 훈 증 소 독 비	복포 훈증(더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포로 피복 하여 훈증)을 한 경우에만 비용 지급
양곡중량시험작업비	양곡의 중량 변화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호 송 료	철도 운송 시 안전관리 요원에 지급되는 비용

9

톤백 및 팔레트 요율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톤백	팔레트
1. 톤백 매입료	7,006	.
2. 톤백 매입장소 입고료	6,812	.
3. 톤백 매입 직송상차료	6,243	.
4. 톤백·팔레트 상차료	2,718	2,845
5. 톤백·팔레트 하차료	2,718	2,845
6. 톤백·팔레트 입고료	4,715	4,935
7. 톤백·팔레트 출고료	4,715	4,935
8. 톤백·팔레트 이송료		.
- 20m초과 50m까지	3,098	3,243
- 50m초과 매 20m마다	1,523	1,594
9. 팔레트 임대료		4,193

부 대 조 건

- (1) 부대조건은 『8. 일반하역료 1)양곡』을 적용하되, 톤백 및 팔레트 운송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톤백 매입료는 **톤백 매입 준비 등을 위한 부대 비용**(지게차·곡물이송기·대형저울 등의 비치·활용 비용)으로 공공비축 매입 현장에서 농가가 톤백으로 출하한 벼를 매입한 때에만 적용한다.
(RPC에서 산물벼를 매입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팔레트 상·하차료 및 입·출고료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주 또는 보관창고주에게 지급하고, 팔레트 임대료는 정부양곡 운송업체에 지급한다.
- (5)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0

항만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구 분	항 목	요 율
일 반 항	적 선 료	12,173
	양 육 료	11,665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 선 료	12,512
	양 육 료	11,977
인천항	적 선 료	12,512
	양 육 료	11,977
평택, 당진항	적 선 료	12,512
	양 육 료	11,977
부산항 및 제주 전항	적 선 료	10,424
	양 육 료	9,603
공 통	경 비 료	299

* 적선료 : 항구에서 화물을 차량에서 내려 선박으로 옮겨 싣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

* 양육료 : 항구에서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차량에 옮겨 싣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

2) 포 장 재

(단위 : 원/속)

항 목		P. P대 40kg들이	P. 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 E대 10kg들이	P. E대 4kg들이	P. P대 톤백들이
일 반 항	적선료	1,238	473	824	315	288	242	2,115
	양육료	1,183	451	790	302	281	233	2,022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선료	1,273	485	845	322	301	251	2,175
	양육료	1,213	465	810	311	285	238	2,077
인 천 항	적선료	1,273	485	845	322	301	251	2,175
	양육료	1,213	465	810	311	285	238	2,077
평택, 당진항	적선료	1,273	485	845	322	301	251	2,175
	양육료	1,213	465	810	311	285	238	2,077
부산항 및 제주전항	적선료	1,057	405	706	271	251	208	1,807
	양육료	974	373	651	248	231	193	1,665
공 통	경비료	31	12	20	8	7	6	52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 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선적할증 및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인천항의 경우 부잔교 이송 작업 시에는 톤당 1,460원을 가산 적용하되,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작업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5) 적선 양육 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 (6) 각 단계별 작업 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 (7) 경비료는 양곡 또는 포장재를 적선, 양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1기(15일)당 적용하며, 양곡 또는 포장재를 직반출입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 실비 정산한다.(다만, 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에서 인정)

(9) 일반항 요율 적용 시 다음 지역의 경우는 아래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 기타 도서 지역에 대해 조작 지시 발생 시에는 적선 양육분 100%를 적용한다.

(10)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다.

(11)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1

철도임

- 한국철도공사 화물 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을 낸다. 다만, 호송료는 별도 책정한 일반하역료에 의하여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 화물 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에서 제외한다.

1) 양 곡

(단위 : 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물(Bulk)
10km 까지	7,817	7,769
20km "	10,135	10,064
30km "	12,322	12,264
40km "	14,451	14,380
50km "	16,011	15,929
60km "	17,064	16,982
70km "	18,211	18,129
80km "	19,311	19,204
90km "	20,339	20,257
100km "	21,049	20,931
120km "	21,346	21,251
140km "	22,704	22,575
160km "	23,888	23,769
180km "	24,976	24,857
200km "	26,926	26,808
230km "	27,258	27,128
260km "	28,571	28,452
290km "	31,184	31,042
320km "	31,408	31,243
350km "	33,951	33,762
380km "	35,168	35,003
410km "	37,736	37,546
460km "	40,490	40,290
510km "	42,962	42,762
510km 초과 매 50km마다	2,507	2,495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대별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0km 까지	345	193	441	247	317	217	306
20km "	444	251	573	322	411	282	396
30km "	543	305	695	391	502	343	483
40km "	634	359	817	462	588	402	564
50km "	704	398	906	512	652	443	625
60km "	751	425	966	546	693	476	668
70km "	801	450	1,030	579	740	507	712
80km "	849	479	1,091	615	786	539	756
90km "	895	504	1,149	647	829	565	796
100km "	925	522	1,191	670	856	586	824
120km "	938	529	1,208	683	869	593	836
140km "	999	563	1,283	724	923	629	889
160km "	1,050	592	1,349	761	970	663	934
180km "	1,098	619	1,412	798	1,016	693	977
200km "	1,185	668	1,523	858	1,029	750	1,054
230km "	1,200	676	1,541	870	1,110	758	1,067
260km "	1,257	709	1,616	914	1,162	795	1,117
290km "	1,370	774	1,764	997	1,269	868	1,220
320km "	1,383	781	1,776	1,002	1,388	873	1,230
350km "	1,492	842	1,918	1,083	1,382	942	1,329
380km "	1,545	872	1,988	1,120	1,431	979	1,376
410km "	1,659	935	2,135	1,203	1,534	1,050	1,477
460km "	1,779	1,005	2,289	1,293	1,647	1,125	1,583
510km "	1,888	1,065	2,429	1,369	1,746	1,196	1,680
510km 초과 매 50km마다	111	63	144	79	102	70	99

부 대 조 건

- (1) 양곡 운송임은 국내 양곡과 수입 양곡 모두 동일 운송요율을 적용한다.(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수입양곡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항지에서 보관 창고까지는 계약에 따른 운송요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운송임은 양곡 운송임을 적용한다.)
- (2) 동일 거리 내에서는 동일 운임을 적용한다.
-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는 실비를 지급하되, 왕복 시 편도에 타 화물을 수송할 때는 편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수송 거리는 km까지 계산하되, 1km 미만은 4사 5입 한다. 다만, 전 수송 거리가 1km 미만이면 1km로 계산한다.
- (5)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다만 총 적재량이 2톤 미만이면 2톤으로 계산한다.
- (6)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7)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8)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 양 곡

(단위 : 원, 3급품 톤/마일당)

거 리	요 율
20 마일 이하	291.25
20 초과 ~ 50 이하	140.00
50 초과 ~ 100 이하	28.32
100 초과 ~ 200 이하	25.25
200 초과 ~ 400 이하	23.12
400 초과	16.85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20 마일 이하	35.63	13.61	23.79	9.08	8.38	6.98	60.93
20 초과 ~ 50 이하	17.14	6.53	11.41	4.35	4.03	3.34	29.30
50 초과 ~ 100 이하	3.44	1.32	2.30	0.88	0.80	0.66	5.90
100 초과 ~ 200 이하	3.06	1.17	2.03	0.78	0.73	0.59	5.26
200 초과 ~ 400 이하	2.84	1.08	1.87	0.71	0.65	0.56	4.83
400 초과	2.03	0.78	1.35	0.50	0.47	0.39	3.50

부 대 조 건

- (1) 양곡의 운임 계산 방법은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내항 화물선 운임 규정”에 의하되 화물 등급상의 인수(因數)와 화물 톤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등급은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등급표(백미, 외미, 소맥 등은 52, 소맥분은 57, 대맥, 조미는 65, 두류는 84 등)에 의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곡종의 화물인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현미·정맥·조·수수 52, 압맥(압소맥)·밀쌀 65, 옥수수 84, 혼합곡 55
 - 나) 화물 톤수의 계산 방법은 동 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정미중량에 포장재료 중량을 가산 적용하되 포장재료 중량은 40kg들이 P.P대는 0.14kg, 20kg들이 P.P대는 0.08kg, 20kg들이 지대는 0.18kg, 톤백들이 P.P대는 2.5kg으로 한다.
- (2) 운항 구간이 20마일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20마일을 최저운임으로 한다.
- (3) 양곡의 적재중량은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 운임에는 화물등급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5)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6) 해양수산부 고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화물입항료의 기본료는 동 고시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7) 해송 운임 요율을 적용하면서 다음 지역의 경우는 아래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 기타 도서 지역에 대한 조작 지시 발생 시에는 실비 정산한다.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9) 이 요율은 2024년 2월 1일 지시분부터 적용한다.